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2471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611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24712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장호영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변론 종결 2019. 8. 13.

판결 선고 2019. 10.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8,65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2. 06:3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회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G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G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2018. 3. 22. G의 부모 I, C에게 합의금으로 218,650,530원을 지급하고, 이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 H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62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자대위권 취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G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전체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보험자대위권 취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G의 유족에게 합계 218,650,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G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다.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G의 손해배상청구권은,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해 산출된 적정 보험금,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된다.

3. 구상금채권의 계산

가. G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 1) 소극적 손해 ○ 기초사항 : J생 남자로 사고 당시 20세 6개월, 기대여명 60.11년
○ 가동연한 : 만 65세
○ 월 소득 : 2017. 11. 12.부터 2018. 4. 30.까지 2,416,018원, 2018. 5. 1.부터 2018. 8. 31.까지 월 2,598,860원, 2018. 9.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월 2,759,394원 (보통인부 월 소득액) 위와 같은 사항 및 생계비 1/3 공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G의 일실수입은 439,957,423원이다.
- 2) 적극적 손해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
-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G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4) 합계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266,974,453원[= (일실수입 439,957,423원 + 장례비 5,000,000원) × 책임제한 60%, 원 단위 미만 버림] + 위자료 50,000,000원 = 316,974,453원

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해 산출된 적정 보험금

- 1)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지급기준 위 지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1. 장례비

가.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용어 풀이>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K협회, L단체)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생활비율:1/3

라. 취업 가능월수

(1)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산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

2)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하여 가) 일실수입

원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G의 정년을 60세로 보고, 위 정년까지는(군복무기간 제외)

일용근로자의 통계 월소득인 2,168,45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일실수입을 279,417,55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원고는 사망위자료로 80,000,000원, 장례비로 50,000,000원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 지급액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G의 과실을 40%로 하여 G의 유족에게 합계 218,650,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위채권액의 계산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316,974,453원이고,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적정 보험금액 및 원고가 G의 유족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액은 218,650,53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위 금액들 중 가장 적은 금액인 218,650,530원이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12.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G의 부모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15,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G의 부모가 2019. 6. 20. 이를 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0,000,000원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650,530원(= 218,650,530원 - 원고가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H으로부터 환수한 금액 15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이유영